

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523호
- 나. 제 안 자 : 이원형 의원(찬성자 19명)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2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## 2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제정(2021.1.7.) 이후 한 차례 개정(2022.4.28.)되었으나, 개정과정에서 인용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되어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함.

## 3. 주요내용

- 잘못 인용된 조문번호를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7조).
-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함(안 제14조)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조례의 제정 이후 개정과정에서 인용조문 번호와 용어가 일부 오기 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발의됨.

##### 나. 오기된 조문번호와 용어의 정비

- 「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제정 이후 1차례 개정(2021.1.7.)되면서 ‘다른 조례와의 관계’ (제5조)가 추가되어 종전의 제5조부터 제15조가 제6조부터 제16조로 변경됨.

#### <조례 개정 사항>

종 전	현 행(2021년 1월 개정)
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대상), 제4조(시장의 책무) <신 설> 제5조(지원계획 등), 제6조(실태조사), 제7조(지원 사업 등), 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 제9조(위원회 구성), 제10조(위원의 임기), 제11조(위원의 해촉),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, 제13조(위원회 운영), 제14조(협력체계 구축), 제15조(시행규칙)	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적용대상), 제4조(시장의 책무) 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제6조(지원계획 등),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지원 사업 등),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, 제10조(위원회 구성), 제11조(위원의 임기), 제12조(위원의 해촉), 제13조(위원장의 직무), 제14조(위원회 운영), 제15조(협력체계 구축), 제16조(시행규칙)

- 그러나 다른 조문에서 인용된 조문번호가 함께 개정되지 않아 잘못된 인용된 조문번호가 존치되었고 표현이 맞지 않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하여 개정안이 발의됨.

**< 조례일부개정안 주요내용 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필수업무"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.)이 정하는 업무</p> <p>3. "필수노동자"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, 근무환경,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제9조-----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제9조----- ----- -----</p> <p>제7조(실태조사) ① ----- 제6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p>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p>1. 시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에 <u>다른</u>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4조(위원회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다른</u>---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○ 이는 조례의 적용과 해석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며, 향후 조례 제·개정에서 시민이 조문과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혜미	02-2180-8056
최범준	